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February 19, 2024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인도네시아: 이전가격문서화, 상호합의절차(MAP)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절차(APA) 관련 새로운 규정 발표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4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재무부 규정 PMK 172 2023” (이하, “PMK 172”)을 통해 이전가격문서화, 상호합의절차(MAP)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절차(APA) 와 관련된 신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PMK 172의 핵심 신규 조항 및 규정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가격문서화 관련 공식적인 요건

- 신규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은 2024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세무조사가 착수되거나 납세자의 이전가격 규정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과세당국이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 이전가격 규정에서 요구한 이전가격보고서 서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전가격문서화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국내 이중과세(Domestic double taxation)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제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동의하고 조세불복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 PMK 172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개념을 규정한 PMK 213의 일부 규정을 폐지합니다.
- '특수관계'라는 용어는 관리적 기능, 기술적 활용, 재무적 상호의존성 등을 포함한 당사자 간의 확장된 의존 관계를 명시합니다.

이전가격문서화 관련 새로운 지침

- 납세자는 두 개 이상의 거래가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거래를 개별 분석해야 합니다. 개별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두 거래를 하나의 통합 거래로 간주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산업분석은 모든 이전가격문서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 무형 자산, 금전대차거래, 자산 양도, 사업 구조조정, 비용 부담 약정 및 기타 금융 거래와 같이 특정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 및 구매를 포함한 기타 거래에 대해서도 해당 거래가 정상가격원칙을 준수하는지 문서화해야 합니다.

MAP 및 APA 관련 지침

- 신규 MAP 규정은 관할 당국 간의 협상 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 전자신청방법 등 APA에 관련하여 행정절차 지침을 제공합니다.
- 다자간 APA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3 서 0076 (2023.12.14)

제목: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 PM 용역 수수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AAA의 영업이익률이 PM 전문업체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의 쟁점 PM 용역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용역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유사용역거래 사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토목·분양건설업 법인으로, 2017년부터 업무용지 등을 매입하여 OOOaaa I,II,III 등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사업(이하 "쟁점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 주식회사 aaa(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자녀와 함께 발행주식 100% 소유, 이하 "aaa")로부터 2017~2020 사업연도 기간 동안 상업용 건축물 개발 관련 시행업무 대행 용역(이하 "쟁점 PM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동 용역 수수료 OOO원을 지급함.
- 처분청은 2022.1.21.~2022.5.27. 세무조사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aaa에게 쟁점PM용역의 수수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다른 적출소득과 청구법인에게 2018~ 201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쟁점

- ①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PM용역 수수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법인은 2016년 12월경 PM용역 전문업체로부터 쟁점분양사업에 대한 PM용역 입찰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적정 수수료(매출액의 2 ~ 5%)를 파악함 - 비용 최소화를 위해 aaa가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청구법인에게 PM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aaa는 특수관계법인 및 신설법인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해 적정 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인 매출액의 1.5%와 운영비 월 OOO원 수준으로 계약 체결 및 합리적으로 쟁점PM용역 대가를 지급함 - aaa의 사무실에는 3개의 회사가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었고 월 임차료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각 법인이 부담하는 등 독립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쟁점PM용역을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a는 2016년 3월경 개업한 신규법인으로 bbb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임대수입 외 쟁점PM용역수입이 전체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음 - aaa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67.2~91.7%로 고액의 수수료에 대응하는 원가 지출이 없고 청구법인 외 다른 거래처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직원 및 사무실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aaa가 가득한 수익은 임대부동산 취득과 청구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상환 등에 사용되었는바 쟁점PM용역은 자녀에게 부를 우회증여할 목적으로 aaa에게 실제 제공받는 용역의 시가보다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청이 쟁점PM용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동종 업종 영업이익률은 비교대상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을 단순 평균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등 관련 법령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산정방식인 점, aaa의 업종을 경영 건설업으로 보아 동 업종의 소득률을 원가에 가산하는 방식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법인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PM용역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어 제3자에게 제공받은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은 국세청에 신고된 동종 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감안하여 계산한 원가수익률로 쟁점PM용역의 시가를 산정함

<p>로 쟁점PM용역의 시가를 산정하였는데 경영 컨설팅업의 경우 일반적인 경영자문업에 대한 것으로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쟁점PM용역의 소득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볼 때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가액은 쟁점PM용역의 합리적인 시가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p>	<p>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벗어난 시가 산정의 경우에도 비교적 법 취지에 충실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aaa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기준경비율 코드에 따른 업종별 평균이익률을 적용한 것으로 동 업종별 평균이익률은 대표적인 PM업체의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점 등을 볼 때 산정한 시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p>
---------------------------------------------------------------------------------------------------------------------------------------------------------------------	------------------------------------------------------------------------------------------------------------------------------------------------------------------------------------------------------------------------------------------------------------------

4) 판단

- 처분청이 쟁점PM용역 수수료의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원가소득률 등은 aaa가 법인세 신고서 기재한 업종 코드가 동일하게 신고된 동종 업체들의 영업이익률 등을 단순 평균하여 산출한 영업이익률 등을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정 방법일 뿐만 아니라, 선정된 업체 또한 PM용역 외 다른 매출이 있는 것인지 여부, 거래조건 및 제공된 용역내용 등 쟁점PM용역과 비교가능한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가액을 쟁점PM용역 수수료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분양사업과 관련하여 PM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PM 전문업체들로부터 용역 제안을 받는 등 적정 수수료를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제시된 **적정 수수료율(매출액의 2 ~ 5%)**에 비하여 청구법인이 aaa와 PM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약정한 쟁점PM용역 수수료율(매출액의 1.5%+운영비 월 000원)**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과 aaa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PM용역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bbb의 자녀들이 aaa의 출자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쟁점PM용역 외 매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내용에 의하면 aaa의 영업이익률이 PM전문업체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PM용역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에 다소 불분명한 측면도 있어 보이므로 거래당사자들의 구체적 거래상황, 거래조건 및 제공된 용역내용 등 쟁점PM용역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어 해당 용역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유사한 용역 거래의 사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4 관세청 업무계획

관세청은 4개의 카테고리(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추진기반)를 바탕으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각 카테고리 별 집중 수행계획을 지정하였습니다.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업무계획을 통해 국제우편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수입규모 및 매출규모에 따른 관세조사 범위 및 강도 결정이 있습니다.

1) [사회안전]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관세청은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합동단속, 협업 및 인프라 확보를 바탕으로 마약 및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집중적으로 관리가 예상됩니다.

- [마약]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글로벌 합동단속을 수행할 예정이며, 마약정보관 해외파견 진행 추진
-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검증·처벌 강화할 예정이며,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식의약품 등의 통관관리 강화 예정
- [협업] 국경관리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 수출입위험정보 DB구축, 위험정보분석 및 우범화물 선별·검사 분야 전문인력·정보 교류 확대 예정
- [인프라] 인공지능 우범화물 선별모델 확대 및 엑스레이 판독시스템고도화 예정

2) [사회안전] 경제안보·공정무역질서 확립

관세청은 수입규모 및 매출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범위 및 강도를 결정하며, 원산지 기준을 바탕으로 단순 조립품에 대한 단속이 예상됩니다.

- [경제안보]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 영업비밀·기술침해물품 등의 수출입통제 확대 및 경제방첩활동 강화
- [무역경제범죄] 탈세행위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범위 개선, 범죄수익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 강화 및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 도입
- [케이(K)-브랜드] 케이(K)-브랜드 및 국내제조기반 보호를 위해 공공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 외국산 부품 단순 조립품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집중단속

“국산원가 비중85%이상”또는“국산원가비중51%이상+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6단위 변화”시 국산 인정

3) [국가번영]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간편한 관세 행정 지원이 예상됩니다.

- [보세제도] 석유 블렌딩 산업 국내유치 지원을 위해 종합보세구역제도 개선 및 국가첨단산업 생산흐름별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 지원
- [비관세장벽 완화]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체결 추진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 구축
- [금융부담 완화] 수출입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성실기업 대상 '월별 납세신고' 제도 도입 및 수출환급 편의 제고

4) [국가변영]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 [서비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및 윈스톱 대민포털 구축, 납세자보호·고객지원 전담부서 신설
- [디지털화] 소액 관세(해외직구품, 여행자휴대품 등)의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등) 제도 도입, 및 '관세 납세증명서' 모바일 발급 등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
- [여행자] 여행자 향수·주류 면세한도 조정
[향수] 60mL→100ml ('24.1.1시행) / [주류] 2병+ 2L이하+ 400달러 이하→조정 검토

5)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

- [국제표준 선도] 전자원산지증명서(e-C/O)등 관세행정국제표준 마련 및 보급
- [친환경 관세청(Green Customs)] 리·업사이클링 수출제품 대상 원산지관리 및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지원

6) [추진기반]관세행정 스마트혁신 가속화

- [규제혁신] 1,591개 소관 행정규칙 재정비 및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 [디지털혁신] 민원서류 전자제출 확대 등 국민에게 편리한 관세행정 구축
- [조직문화개선] 스마트 혁신을 위한 디지털인재 육성 및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